

우주기본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2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정동영 · 노종면 · 최민희
김우영 · 김 현 · 윤준병
이원택 · 황명선 · 민형배
진선미 · 박민규 · 이성운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의 진흥, 우주산업의 육성 및 우주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우주항공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 전략 수립하고, 이에 맞춰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함(안 제9조).
- 라.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우주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주거, 우주산업활동, 우주자원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우주교통관리 등 우주활동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바.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우주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의 진흥, 우주산업의 육성 및 우주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

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4. “우주자원”이란 자연우주물체에서 추출된 자원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5. “우주폐기물”이란 임무가 종료되거나 기능이 정지된 인공우주물체와 그 파편을 말한다.

6.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8.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 국가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① 국가는 20년 단위로 국가우주항공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분야 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분야 국제협력 및 국가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우주항공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우주항공 개발 및 이용의 단계별 발전전략
3. 우주안보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전략
4.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전략
5.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는 5년마다 국가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가기본전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하 “분야별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위성정보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3.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4. 우주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기본계획

② 분야별 기본계획등은 국가기본전략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기본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 ①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구(이하 “우주개발총괄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3.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4. 우주항공분야 산학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주항공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우주개발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④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⑤ 우주개발총괄기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우주개발총괄기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아닌 자는 우주개발총괄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① 우주개발총괄기구는 국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우주개발총괄기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우주항공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주개발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허가 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주항공청장은 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총괄기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 또는 시제품 생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국제질서 준수, 공동연구개발, 우주안보 및 우주자원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산학연협력의 촉진)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우주활동 육성 등) ① 국가는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주거,

공장 등 우주산업활동, 우주자원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우주교통관리 등 우주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주활동의 지속가능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인공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 ① 국가는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및 국제 등록, 안전한 발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 ① 국가는 우주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주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2. 우주자원 관련 국제협력 증진
3.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이용 촉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제6조제1항에”를 “「우주기본법」 제8조제1항에”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본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